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관 세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사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관세사가 연간 수입실적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기한과 보존기간 및 관세사 징계기록 관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 시 등록항목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신설)

관세사 등록 시에 등록하는 항목을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년도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으로 명확히 함.

나.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보존기간 규정(안 제21조2 신설)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관세사에게 작성·제출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다. 기록·관리 대상 관세사 징계결과 규정(안 제35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한 경우 관세사의 인적사항, 사무소명, 관할

세관, 자격증번호, 징계사유·내용 및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2.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자격 취득년도
5.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제21조의2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3조의4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35조의2 (징계결과의 기록·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관할세관
3. 자격증번호
4.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5.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u><신 설></u>	제16조(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① <u>법 제7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 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관세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관세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u> <u>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u> <u>3. 자격증번호</u> <u>4. 자격 취득년도</u> <u>5.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 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u>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21조의2 (업무실적 보고) ① <u>법 제13조의4에 따른 업무실적 내 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u> <u>② 관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내역서를 법 제13조의4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u>

<신 설>

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35조의2 (징계결과의 기록·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징계 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세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관할세관
3. 자격증번호
4.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5. 「관세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8